

의안번호	제 232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5월 일 (제 270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5월 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
----------	-----

제출연월일 : 2008. 5.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1)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 (2)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나.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 삭제(안 별표 1)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취

나. 입법예고(2008. 2. 29. ~ 3. 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로,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를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 ④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 ⑤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별표 1중 고등학교 배정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증명수수료란중 "재학 및 재적에 관한 증명"을 "재적에 관한 증명"으로, "수료(예정)에 관한 증

명"을 "수료에 관한 증명"으로, "졸업(예정)에 관한 증명"을 "졸업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 제증명수수료란의 비고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한다.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1.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수수료	1건	30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 ----- .</p>
<p>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 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p>	<p>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③(생략)</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생략) ②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현행과 같음) ②----- .</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모·부자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특</p>	<p>1.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 「한부모가족지원법」----- 「장</p>

현행					개정안				
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자 <신설> <신설> <신설>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③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 학에 따른 제증명 ④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⑤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별표 1】 (단위: 원)					【별표 1】 (단위: 원)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구분	종류	기준	수수료	비고
1.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고등학교 입학 · 전학 · 편입 학 배정수수료	1건	300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제 81조 제1 조	1.고등학교 배정수수료	1. 고등학교 진 학 · 편입학 배정 수수료	1건	300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제81 조
4 제증명 수수료	2. 학적에 관한 증명 나. 재학 및 재적에 관한 증명 마. 수료 (예 정)에 관한 증명	1건	300	지방자치법 제128조	4 제증명 수수료	2. 학적에 관한 증명 나. 재적에 관한 증명	1건	300	지방자치법 제137조
	바. 졸업 (예 정)에 관한 증명	1건	300			마. 수료에 관한 증명	1건	300	
		1건	300			바. 졸업에 관한 증명	1건	300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대상자 등)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 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